



선 람	기 관 의 장

제1316호

2024. 1. 19.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4-1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3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4
- 삼척시 공고 제2024-104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0
- 삼척시 공고 제2024-105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4
- 삼척시 공고 제2024-108호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4
- 삼척시 공고 제2024-109호 원덕 임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4호선) 개설공사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29

공 람									
--------	--	--	--	--	--	--	--	--	--

삼척시 고시 제2024-16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403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 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 주소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리 6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고천1길 403	20240119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 (고천길분기)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1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1길 43	20240119	신규 부여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3-103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원덕도서관 개축공사’의 준공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는 원덕도서관의 위치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덕도서관 위치 변경(안 별표 1)

- (현행)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3
- (개정)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1

나. 원덕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도서관명	실명	기준	금액	비고
원덕도서관	다목적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강의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청석로3길 16-41(삼척시 평생학습관)
삼척시청 평생교육과(도서관건립TF)
- 전화 : 033-570-4448
- FAX : 033-570-3188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조례 제 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고
도계도서관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 25-18	
원덕도서관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446-11	
남양 작은도서관	삼척시 중앙시장1길 18	
평생학습관 작은도서관	삼척시 청석로3길 16-41	

[별표 2]

공공도서관 이용료(제18조 관련)

1. 도서관자료 복사·출력 수수료

규격	단위(1매당)	금액	비고
B5	단면	30원	
	양면	50원	
A4	단면	40원	
	양면	60원	
B4	단면	50원	
	양면	80원	
A3	단면	70원	
	양면	100원	

2. 부대시설 사용료

도서관명	실명	기준	금액	비고
원덕도서관	다목적실	1회 2시간 이내	50,000원	※ 삼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익의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강의실			

3. 회원증(RF카드) 발급 수수료

가. 신규 발급: 무료

나. 재발급(분실·훼손): 1,000원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04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삼척시장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책꾸러미 배부 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독서문화 진흥 사업 추가(안 제4조)

-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청석로3길 16-41(삼척시 평생학습관)
삼척시청 평생교육과(도서관건립TF)
- 전화 : 033-570-4448
- FAX : 033-570-3188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3-105호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삼척시장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원덕도서관 개축공사’ 준공에 따라 새롭게 운영되는 원덕도서관 및 삼척시 공공도서관의 운영기준을 현실화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불분명한 도서관 운영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명, 조문 및 자구, 용어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기휴관일을 매주 월요일로 정함(안 제3조)
- 나. 종전의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도서의 열람), 제8조(열람

- 장소) 등 현재 도서관 운영 현황과 맞지 않는 조문 삭제
- 다. 회원가입자격 및 회원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 라. 관외 대출 도서 수 조정(안 제8조)
- 마. 참고도서 및 전집류 관외대출 제한 조항 삭제(안 제14조)
- 바. 대출 기간 조정 및 도서 연체자 대출 중지 근거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평생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청석로3길 16-41(삼척시 평생학습관)
삼척시청 평생교육과(도서관컨설팅TF)
- 전화 : 033-570-4448
- FAX : 033-570-3188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삼척시 공공도서관 열람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삼척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2.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단, 일요일은 09:00~13:00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정기 휴관일) 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연말 대청소일(12월 30일)

제4조(임시 휴관일) 시장은 도서관 시설의 정비, 도서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도서관을 휴관할 필요가 경우에는 휴관일 3일 전까지 이를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자료를 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3. 음주 또는 주류를 소지하는 행위
4. 잡담, 집회, 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 회원가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

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거소를 둔 국내 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

아야 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공무원증 등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3. 제1항제2호의 사람: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 4. 제1항제3호의 사람: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5. 미성년자: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증이나 대출 받은 도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된다.

② 회원은 주소나 전화번호 등 회원 정보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린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회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서관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제8조(도서 대출) ① 회원은 도서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증을 제시하고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는 5권 이내로 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 대상)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시중에서 동일 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 도서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도서는 대출하지 않는다.

1. 희귀서와 귀중도서
2. 그 밖에 관리자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10조(대출기간 및 반납) ①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대출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대출 받은 도서를 반납해야 하며, 연체에 따라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부담한다.

③ 회원이 대출 받은 도서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자는 상당한 기간 이내 반납할 것을 독촉하고 연체일수만큼 해당 회원에 대한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반납 독촉을 2회 이상 받은 회원에게는 6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도서의 정리·감사·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의 반납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도서를 즉시 반납할 것을 회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대출의 중지) 관리자는 장서의 정리, 그 밖에 도서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조치) ① 관리자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도서변상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종료 후 14일이 경과되도록 반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서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은 물품(동일 도서) 또는 해당 도서의 시중 가격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독서 장려) 관리자는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작은 도서관, 순회문고, 스마트도서관, 마을문고, 그 밖의 방법으로 독서를 관외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삼척시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 (* 필수입력 항목)

성명 *		성별 *	남, 여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폰 *	
제2연락처	관계			휴대폰	
(가족,친지)	* 자료 연체 시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학교 및 직장명				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성명	(만14세 미만 가입)	회원과의 관계	(만14세 미만 가입)	법정대리인 연락처	(만14세 미만 가입)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

서약서

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서관 회원 규약을 준수 할 것이며,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및 훼손 하였을 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변상 (동일도서대납가능) 책임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삼척시 도서관장 귀하

※참고사항

1. 도서관자료(책) 이용은 무료이며, 가입된 회원은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아 도서관자료(책)를 가정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14일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분실(훼손·오손)도서변상통지서

제 호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는 아래와 같이 본 삼척시 도서관의 도서를 분실(훼손·오손)하였기에 「삼척시 공공도서관운영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소정 기일 내에 해당도서 또는 당해도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시기 바랍니다.

○ 변상하여야 할 도서 및 변상금액

도서번호	도 서 명	대출(열람)일자	반환기한	변상금액
합 계	권			원

변상기일 : 년 월 일까지

○ 변상금 납부장소 : 삼척시 도서관

변상통지일 : 년 월 일

삼척시 도서관장

(변상책임자) 주 소 :

성 명 :

귀하

(생년월일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청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108호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삼척시장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시의 역점 시책 또는 비전, 도시브랜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시정 소식지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절차 진행과 반영을 위하여 시정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식지 명칭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조)

- (현행)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원더폰 삼척"으로 한다.
- (개정)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한 용어 및 자구 등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총무과(자치행정부서)
- 전화 : 033-570-3439
- FAX : 033-570-3133

4. 참고사항

이 조례 제정안은 삼척시 홈페이지(<http://samcheok.go.kr>) 입법/공고/고시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더풀 삼척”으로 한다”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소식지”를 “시장은 소식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다른”으로,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명칭) 삼척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u>"원더풀 삼척"</u>으로 한다.</p>	<p>제2조(명칭) ----- ----- -- <u>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이 따로 정한다.</p>
<p>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u>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으로 한다.</p>	<p>제3조(발행인) ----- <u>시장</u>----- -----,</p>
<p>제6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u>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u> 등 지역소식 5. (생략)</p>	<p>제6조(게재내용) ----- -----, 1. ~ 3. (현행과 같음) 4. <u>관계 기관</u> ----- ----- 5. (현행과 같음)</p>
<p>제7조(편집) <u>소식지</u>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p>	<p>제7조(편집) <u>시장은 소식지</u>----- ----- ----- -----, -----,</p>
<p>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u>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배부를 병행</u>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8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u>다른</u> ----- <u>우편발송과 직접 배부</u>----- ----- -----,</p>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안
- 의견제출자:

개청안	검토의견	
	수청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24 - 109호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원덕 임원 도시계획도로(도로:소로3-44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조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9일

삼척시장 (인)

- 1.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도시과장)
- 2. 사업명 : 원덕 임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4호선) 개설공사
- 3. 사업개요
 - 가. 위치 :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44-4번지 일원
 - 나. 사업내용 : 소로3-44호선 도로개설 L=107.6m B=6.0m
- 4. 토지출입 및 보상대상 :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와 같음
- 5.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4. 1. 19. ~ 2024. 2. 5.(게재일로부터 17일간)
- 6. 열람장소
 - 삼척시 도시과 도시개발부서 (☎ 033-570-3447)
- 7. 이의신청
 - 보상계획공고 다음날부터 17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보상시기
 - 가. 열람.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선정 개별 통지
 - ※ 보상시기는 보상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계약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9.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절차 : 물건소유자와 협의 계약하되, 협의불응 시 수용재결 신청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나. 보상가격의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 또는 소유자 어느 한쪽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함.

다.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삼척시 도시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		소유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평가업자
	지번	면적(m ²)	주소	성명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같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보상계획 및 보상물건은 추후 사업내용의 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변경(제외)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과 (☎ 033-570-344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명또는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관계인)	
대상토지 및 물건		
이의신청 요지 및 이유		

원덕 임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4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과 관련하여 상가와 같이 이의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삼척시장 귀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소유권

▣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

▣ 사업명 : 원덕 임원 도시계획도로(소로3-44호선) 개설공사

가. 토지조서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등기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1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44-4	대	32	30		삼척시				
2		144-2	대	85	2	강*****도 **시 **읍 ****로 **	아자				
3		143-3	대	9	3	**군 **읍 **리 ***	최희				
						시 **동 *-# **아파트 **_***	김영				
						군 **읍 **리 *	김희				
						시 **동 **-0	김희				
						도 **군 **면 **리 *	김현				
						군 **면 *리 **	김선				
						시 **동 ** **아파트 ***	김정				
군 **읍 **리 *		김호									
4		62-6	도	599	2		건설부				
5		150	대	10	2	**군 **읍 **리 ***	김열				
	도 **시 **읍 **로 **_** **호(**빌라)					화관					
6	62-20	도	8	1		건설부					
7	149-16	도	167	160		삼척시					
8	65-11	구	212	98		환경부					
9	65-9	구	154	1		강원도					
10	149-17	대	79	62		삼척시					
11	1208-139	천	36	30		환경부					
12	149-18	대	28	15		삼척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지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등기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명		
13	삼척시 민원리읍 리	1208-64	제	462	1		황경부					
14		142	도	579	43		삼척시					
15		143-2	대	70	67		삼척시					
						군 **읍 **리 *	최*희					
						군 **읍 **리 *	김*희					
						시 **동 *-***	김*희					
						군 **면 *리 **	김*선					
						시 **동 ** **아파트 ***	김*정					
		군 **읍 **리 *	김*효									
16		144-5	대	4	4		삼척시					
17		62-21	도	9	8		건설부					
18		150-1	대	15	14		삼척시					
19		148-1	대	13	5		삼척시					
20		98-6	도	30	14		건설부					
21		149	대	392	2	**도 **시 **읍 ****길 **-**	전*만					
22		149-19	잡	205	201	**도 **시 **읍 ****로 **-**	박*욱					
23		149-11	잡	456	37	**도 **시 **읍 ****로 **-**	박*욱					
24		149-8	대	109	31	**도 **시 **읍 **리 ***-*	장*자					
25		1208-66	대	33	3		강원도					
26		1208-138	천	8	8		황경부					
27		144-1	대	58	2	**도 **시 **읍 ****로 **	이*자					
합계				3,862	846							

나. 물건조서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명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43-2 외 4필지	창고지붕	샌드위치판넬,합석	62 ㎡		김*호			
		창고벽체	샌드위치판넬,PVC 슬레이프	46 ㎡					
		출입구불력담	H=0.9~1.2m, T=100	5 m					
		출입문	양류형(알루미늄)	1개					
		화단불력담장	H=0.7m, T=100	4.5 m					
		화단출입문	철스	1개					
		창고불력담장	H=0.7m, T=100	7 m					
		창고불력담장2	H=2.0~1.5m, T=100	2.5 m					
	150	주택(창고)	철근콘크리트조	1동					
	149-19, 149-9	지붕	샌드위치판넬	12 ㎡					
		불력담	H=1.0m, T=100	14 m					
	149-17	지붕	샌드위치판넬	3.6 ㎡					
		불력담	H=1.5m, T=100	8 m					